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12. 13.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8년 12월 6일

나. 제출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18년 12월 10일

라. 상정일자: 제21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제10차 행정위원회(2018. 12. 1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국장 김인문)

가. 제안이유

- '경쟁력 있는 도시 영등포' 로 발 빠르게 다가가기 위해 전략사업들을 총괄 추진할 '미래비전추진단' 설치에 따른 4급 일반직 증원을 위해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개정(안 제2조)
 - '1,412'을 '1,413'로 개정(증 1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385'을 '1,386'로 개정(증 1명)
- 정원의 직급별 정원표 개정(별표 3)
 - 총계 '1,412'을 '1,413'으로 개정(증 1명)
 - 일반직 총계 '1,407'을 '1,408'로 개정(증 1명)
 - 일반직 6급 이하 '1,324'를 '1,331'로 개정(증 7명)

기관별		총 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직급별						
총 계		1,413	1,413			
정무직		1	1			
일반직 계		1,408	1,408			
일반 직	3급	1	1	-	-	-
	4급	9	7	1	1	-
	5급	65	33	2	12	18
	6급 이하	1,331	1,331			
	전문경력관	2	2			
별정직 계		4	4			
6급 상당 이하		4	4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최광묵)

- 본 개정 조례안은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구성으로 조직의 운영 건전성을 제고하여 역점사업 및 전략사업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공무원 정원을 증원 하려는 것으로서,
-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 본문의 개정사항은 공무원의 총 정원수를 현재1,412명에서 1,413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기준인건비 1,244억원 내에서 1명을 증원하려는 것이며,
 - 안 제4조 “별표3” 직급별 정원표에서는 안 제2조에서의 증원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일반직의 4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 검토결과,

미래 영등포를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해 구민이 참여하고 구민이 공감하는 미래비전을 창조적으로 설정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신규 총원하는 것으로써, 2018년도 우리구의 기준인건비 총액은 1,244억 원이고, 예산 편성액은 1,194억 원이며, 신규 증원되는 1명의 인건비는 연간 1억 914만원으로, 개정안에 따른 인력증원 이후에도 구의 총 인건비는 기준인건비 내에서 별다른 재정적인 문제 없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됨.

4. 심사결과: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70 호
----------	--------

제출연월일: 2018. 12.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경쟁력있는 도시 영등포’ 로 발빠르게 다가가기 위해 전략사업들을 총괄추진 할 ‘미래비전추진단’ 설치에 따른 4급 일반직 증원을 위해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개정(안 제2조)

- 1) 정원의 총수 ‘1,412’를 ‘1,413’으로 개정(증 1명)
- 2) 집행기관의 정원 ‘1,385’를 ‘1,386’으로 개정(증 1명)

나. 정원의 직급별 정원표 개정(별표 3)

- 1) 총계 ‘1,412’를 ‘1,413’으로 개정(증 1명)
- 2) 일반직 총계 ‘1,407’을 ‘1,408’로 개정(증 1명)
- 3) 일반직 4급 총계 ‘8’ 을 ‘9’로, 본청 ‘6’을 ‘7’로 개정(증 1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예산수반사항 검토 완료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인권영향평가: 원안동의
- 3)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석평가서 작성 제외 법령

라. 입법예고(2018. 11. 28. ~ 12. 3. / 5일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412명”을 “1,413명”으로, 같은 조 제1호 중 “1,385명”을 “1,386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의 존속기한) 한시정원 4급 1명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해서는 그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총 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413	1,413			
정무직		1	1			
일반직 계		1,408	1,408			
일 반 직	3급	1	1	-	-	-
	4급	9	7	1	1	-
	5급	65	33	2	12	18
	6급 이하	1,331	1,331			
	전문경력관	2	2			
별정직 계		4	4			
6급 상당 이하		4	4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영등포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1,412명</u>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1,385명</u></p> <p>2. (생 략)</p>	<p>제2조(정원의 총수) ----- ----- <u>1,413명</u> ----- -----.</p> <p>1. ----- <u>1,386명</u></p> <p>2. (현행과 같음)</p>																																																																																																																																		
<p>[별표 3]</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p>	<p>[별표 3]</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text-align: left;">기관별 직급별</th> <th>총 계</th> <th>본청</th> <th>구의회 사무국</th> <th>보건소</th> <th>동</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 style="color: red;">1,412</td> <td colspan="4" style="color: red;">1,412</td> </tr> <tr> <td>정무직</td> <td>1</td> <td colspan="4">1</td> </tr> <tr> <td>일반직 계</td> <td style="color: red;">1,407</td> <td colspan="4" style="color: red;">1,407</td> </tr> <tr> <td rowspan="5"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일반직</td> <td>3급</td> <td>1</td> <td>1</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 style="color: red;">8</td> <td style="color: red;">6</td> <td>1</td> <td>1</td> </tr> <tr> <td>5급</td> <td>65</td> <td>33</td> <td>2</td> <td>12</td> <td>18</td> </tr> <tr> <td>6급 이하 소계</td> <td>1,331</td> <td colspan="4">1,331</td> </tr> <tr> <td>전문경력관 소계</td> <td>2</td> <td colspan="4">2</td> </tr> <tr> <td>별정직 계</td> <td>4</td> <td colspan="4">4</td> </tr> <tr> <td>6급 상당 이하</td> <td>4</td> <td colspan="4">4</td> </tr> </tbody> </table>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412	1,412				정무직	1	1				일반직 계	1,407	1,407				일반직	3급	1	1			4급	8	6	1	1	5급	65	33	2	12	18	6급 이하 소계	1,331	1,331				전문경력관 소계	2	2				별정직 계	4	4				6급 상당 이하	4	4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text-align: left;">기관별 직급별</th> <th>총 계</th> <th>본청</th> <th>구의회 사무국</th> <th>보건소</th> <th>동</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 style="color: blue;">1,413</td> <td colspan="4" style="color: blue;">1,413</td> </tr> <tr> <td>정무직</td> <td>1</td> <td colspan="4">1</td> </tr> <tr> <td>일반직 계</td> <td style="color: blue;">1,408</td> <td colspan="4" style="color: blue;">1,408</td> </tr> <tr> <td rowspan="5"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일반직</td> <td>3급</td> <td>1</td> <td>1</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 style="color: blue;">9</td> <td style="color: blue;">7</td> <td>1</td> <td>1</td> </tr> <tr> <td>5급</td> <td>65</td> <td>33</td> <td>2</td> <td>12</td> <td>18</td> </tr> <tr> <td>6급 이하 소계</td> <td>1,331</td> <td colspan="4">1,331</td> </tr> <tr> <td>전문경력관 소계</td> <td>2</td> <td colspan="4">2</td> </tr> <tr> <td>별정직 계</td> <td>4</td> <td colspan="4">4</td> </tr> <tr> <td>6급 상당 이하</td> <td>4</td> <td colspan="4">4</td> </tr> </tbody> </table>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413	1,413				정무직	1	1				일반직 계	1,408	1,408				일반직	3급	1	1			4급	9	7	1	1	5급	65	33	2	12	18	6급 이하 소계	1,331	1,331				전문경력관 소계	2	2				별정직 계	4	4				6급 상당 이하	4	4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412	1,412																																																																																																																																	
정무직	1	1																																																																																																																																	
일반직 계	1,407	1,407																																																																																																																																	
일반직	3급	1	1																																																																																																																																
	4급	8	6	1	1																																																																																																																														
	5급	65	33	2	12	18																																																																																																																													
	6급 이하 소계	1,331	1,331																																																																																																																																
	전문경력관 소계	2	2																																																																																																																																
별정직 계	4	4																																																																																																																																	
6급 상당 이하	4	4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413	1,413																																																																																																																																	
정무직	1	1																																																																																																																																	
일반직 계	1,408	1,408																																																																																																																																	
일반직	3급	1	1																																																																																																																																
	4급	9	7	1	1																																																																																																																														
	5급	65	33	2	12	18																																																																																																																													
	6급 이하 소계	1,331	1,331																																																																																																																																
	전문경력관 소계	2	2																																																																																																																																
별정직 계	4	4																																																																																																																																	
6급 상당 이하	4	4																																																																																																																																	